#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48

발의연월일: 2025. 5. 19.

발 의 자: 민형배・이개호・정동영

주철현 · 김동아 · 박지원

김용민 · 양문석 · 이성윤

소병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 및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

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법률 제 호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개발"을 "지역균형개발"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지역개발"을 "지역균형개발"로 하고, 같은 항제8호 중 "발전"을 "균형적 발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	제1조(목적)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u>지역개발,</u> 금융시장 안정 및 그	지역균형개발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	
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u>.</u>
제18조(업무)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업무)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	
을 공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u>지</u>	3 <u>\textbf{x}</u>
<u>역개발</u>	<u>역균형개발</u>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	8
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u>발전</u> 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u> 균형적 발전</u>
필요한 분야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